

本協會

定 款

1969. 8. 1. 制定
1969. 9. 22. 改正
1969. 10. 29. 改正
1969. 11. 18. 改正
1969. 12. 26. 改正

第 1 章 名稱 및 所在

第 1 條 本會는 社團法人 韓國食品工業協會라 稱한다.

第 2 條 本會는 本部를 서울特別市에 두며, 支部를 各道에 둘 수 있다.

第 2 章 目的 및 事業

第 3 條 本會는 食品界의 各 部門別로 優秀한 品質을 生産·販賣하기 爲한 共同의 努力 및 權益 保護에 目的을 두고, 不良食品을 根絶시켜 社會淨化에 寄與함과 會員의 相互親睦을 圖謀한다.

第 4 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製品 品質向上을 爲한 調査研究
2. 優良食品 選擇에 關한 消費者 啓蒙 및 宣傳
3. 會員의 共同權益 保護를 위한 立法 建議
4. 不良食品 製造의 未然防止, 摘發, 公開에 依한 消費者 保護
5. 食品工業에 必要한 原料 資材의 輸入 및 需給에 關한 指導 및 斡旋
6. 會員의 相互親睦
7. 本會의 共同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其他 事業

第 3 章 會員과 會費

第 5 條 本會는 다음과 같은 會員으로 構成한다.

1. 會員은 優良食品 製造業所 代表者로, 各 部門別로 大企業體에 限하여 構成함을 原則으로 한다.
2. 會員의 加入 및 除名은 理事會 薦擧 後

全會員 3分の 2以上의 贊成으로 決定한다.
第 6 條 會費는 入會金, 月例會費 및 特別會費로 區分하며 金額은 理事會 決議에 依한다. 但, 既納付된 入會金, 月例會費 및 特別會費는 一切 返還치 않는다.

第 4 章 任員 및 職員

第 7 條 本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會 長	1人
副 會 長	2人
專務理事	1人
理 事	若干人
監 事	1人

本會의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 8 條 本會는 理事會의 決議로 顧問 若干名을 推戴할 수 있다.

第 9 條 本會의 編制 및 職務는 別途로 定하는 處務 規程에 依한다.

第 10 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를 統理하고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第 11 條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代理한다.

第 12 條 專務理事는 會長 및 副會長을 補佐하여 會務를 執行한다.

第 13 條 監事는 本會의 事務와 財政을 監査하며,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14 條 職員 및 雇員은 會長圈이 任免하고 會長 指導下에 會務에 從事한다.

第 15 條 本會 任員 任期는 다음과 같다.

1. 會 長	2年
2. 副 會 長	2年
3. 理 事	2年

4. 監 事 2年

第16條 任員의 就任은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얻는다
 第17條 任員의 缺員이 있을 때는 理事會에서 補選하고, 補選된 任期는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5章 會議와 組織

第18條 本會는 다음과 같은 議決機關을 둔다.
 1. 總 會
 2. 理 事 會
 第19條 總會는 年 1回 1月中에 이를 召集한다.
 總會는 在籍 正會員 過半數 以上の 參席으로 成立되며 參席會員의 過半數로서 議決한다.
 可否同數일 때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正會員 3分의 1以下 또는 理事會의 要請이 있을 때는 會長은 臨時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不得已한 事情으로 總會에 參席 못하는 會員은 總會에서의 行爲의 모든 權限을 他參席者에게 委任할 수 있다.

但, 委任에 關하여는 書類上의 委任要式을 갖추어야 한다.

第20條 總會는 다음의 事項을 議決한다.
 1. 理事會에서 提出된 事業計劃書
 2. 豫算 및 決算
 3. 任員選出
 4. 定款의 變更
 5. 其他 重要事項

第21條 理事會는 會長團 및 理事로 構成하며,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理事의 3分의 1 以上の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22條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事業計劃 樹立
 2. 豫算 및 決算報告
 3. 新會員 加入 및 除名 薦舉
 4. 顧問 推戴 및 任員 補選

5. 其他 重要한 事項

6.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第23條 理事會는 理事 過半數의 參席으로 成立되며 參席人員의 3分의 2以上 贊成으로서 議決한다.

第6章 財 政

第24條 本會의 財政은 다음과 같은 收入으로 充當한다.

1. 入 會 金
2. 月例會費
3. 特別會費
4. 贊 助 金

第25條 入會金, 月例會費, 特別會費는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決定한다.

第7章 附 則

第26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 1일부터 12月 31日로 하고 會計는 一般會計 規程에 準한다.

第27條 會員으로서 月例會費를 3個月以上 滯納할 때에는 自動的으로 會員權을 喪失한다.

第28條 會員의 親睦을 圖謀하기 위하여 全會員의 月例會를 갖도록 한다.

第29條 本定款은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30條 本會의 設立當時 理事 및 監事는 다음에 例舉한 者로 한다.

理 事 全	仲 潤
" 閔	厚 植
" 許	昌 成
" 朴	奎 會
" 朴	在 華
" 韓	文 錫
" 金	海 東
" 徐	鵬 澤
" 韓	品 愚
監 事 崔	亨 奎